

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1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개정이유

개별법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신설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제1항에 의한 위임사무 신설
 - 읍면동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5.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
나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

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사무위임조례”를 “구미시 사무위임 조례”로 한다.

별표2의 사무위임사항에서 내무행정 부문 중 위임사무명에 “7. 출입국사실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내무 행정	7. 출입국사실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	1. 출입국사실증명 발급	출입국관리법 제88조	읍면동장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구미시사무위임조례</u>	<u>구미시 사무위임 조례</u>

관련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04조 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출입국관리법」

제88조(사실증명의 발급) ① 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시·군·구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. 다만,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법의 절차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.